

[]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 발급 신청서
 [] 보육교사 [] 재발급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자격 종류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4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영아 전담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학력	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목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어린이집 명칭	자격 구분(등급)	발령자
		
			
			

보수 교육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공통: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발급신청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다만,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해당자만 한정합니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